

내 용 : ‘산타캐시’ 토큰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률검토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질의의 요지

귀사 씽킹블록체인 주식회사는 2018. 3. 설립된 대한민국 서울 소재 영리목적 법인으로서 ‘투명한 기부(Donation)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Santa Vision Projec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2017년도 기부참여율이 26% 정도인 점 등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비하여 국내 기부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기부에 대한 ‘불신’으로 판단한 연후에 ①블록체인 기술을 기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기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을 구축하고 ②위 플랫폼은 기부 하는 자와 기부 받는자의 매개체가 되어 참여자들 간에 기부금 사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기능하며

③귀사는 위 플랫폼이 활성화되도록 세계 각국의 자선단체들과 연계하여 위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④그 촉진수단으로서‘산타캐시’및‘산타페이’라는 두 종류의 토큰(token)을 발행하며

⑤‘산타캐시’토큰은 국내 및 해외 암호화화폐거래소 등에상장되어 기금조성 및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한편 ‘산타페이’토큰은 고정적 가치를

가지며 기부 등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⑥‘산타캐시’토큰은 귀사의 플랫폼 참여자들이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별도의 채굴활동을 통해 채굴하여 획득할 수있으므로 ⑦위 과정을 통해 위 플랫폼은 활성화되고, 최종적으로 투명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기부가 활성화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귀사는 2018. 3.부터 현재까지 약 3년 간 위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2019. 3. 위 프로젝트에 활용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 화폐 개발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발행한 암호화 화폐인 ‘산타캐시’토큰을 국내외 암호화 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합니다.

귀사는 위와 같이 발행한 ‘산타캐시’토큰(‘산타페이’토큰은 제외합니다)을 대한민국 소재 암호화화폐거래소인 ‘코인원’ 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며 상장에 앞서‘산타캐시’토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즉 위 토큰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증권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소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II. 검토

1. 본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 본 의견서는 귀사가 제공한 프로젝트 백서(PROJECT White Paper) 및 이에 관한귀사의 구두 설명 등 제한된 정보에 기반 하여 검토·작성된 것입니다.

귀사는 위 질의와 함께 '산타캐시'토큰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White Paper(백서,이하 '백서'라고 합니다)를 제공하였으며 귀사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위 백서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구두 설명(대표이사 이상욱, 대리인 김덕곤)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위 백서에 기술된 내용 및 귀사의 부연 설명을 기반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만약 위 내용 및 설명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본 의견서는 '산타캐시'토큰의 법적 성질 이외에 '산타페이'토큰의 법적 성질, 사업의 적법 여부 및 백서 그 자체 등에 관한 검토는 제외되었습니다.

귀사는 현재 '산타캐시'토큰을 상장하고자 하므로 위 백서에 기재된 '산타페이'토큰의 법적 성질은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귀사가 제공한 백서의 내용 그 자체의 적법성 및 본 건 사업의 적법성 등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산타캐시'토큰의 법적 성질 이외의 사항은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의견서는 귀사가 현재 '산타캐시'토큰을 대한민국 소재의 암호화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하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사는 이미 '산타캐시'토큰을 발행하였고 위 토큰을 2019. 9. 중국 소재 암호화화폐거래소 '씨텍스(CITEX)', 2020. 3. 대한민국 소재 암호화화폐거래소 '보라비트(BORABIT)', 2020. 9. 대한민국 소재 암호화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FOBLGATE)'등에 상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토큰을 제공하여 모금행위(ICO)를 한 바 없습니다.

본 의견서는 위 '산타캐시'토큰이 2021. 2. 현재 대한민국 소재 암호화화폐거래소'코인원'에 상장되는 경우 및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작성되었으며 다른 암호화 화폐 거래소 또는 다른 국가의 증권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의견서의 검토 내용이 전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의견서는 2021. 2. 현재 제정·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에 기반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후 암호화 화폐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 암호화 화폐 관련 규제를 위한 기본법(이른바 '업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암호화 화폐의 법적성질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의 입법화 추세 및 국내 언론보도 내용 등을 고려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 및 행정부는 암호화 화폐 관련 규제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견서는 '2021. 2.' 시점에서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검토한 내용이므로 향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역외 적용

위 규정에 의하여, 암호화 화폐 발행(유통 포함) 주체가 다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해외국가 소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암호화 화폐 발행(유통 포함) 주체가 해 외국가 소재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암호화 화폐를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행 및 상장의 효과가 대한민국 내 미치는 경우에는 위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귀사가 발행한 '산타캐시' 토큰을 대한민국 소재 '코인원'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물론이며 해외국가 소재 암호화화폐거래소에 상장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정의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4. 귀사의 '산타캐시'토큰은 위와 같은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 합니다.

가. '산타캐시'토큰의 발행주체, 구조, 획득 및 사용 방법 등

(1) 위 토큰의 발행주체는 대한민국 소재 법인 씽킹블록체인 주식회사입니다.

(2) '산타캐시'토큰의 구조에 관하여, 누구든지 채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따라 '산타캐시'토큰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산타캐시'토큰이 상장된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위 토큰을 구매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즉, '산타캐시'토큰의 획득방법에 관하여, 우선 '채굴(POW)'방식으로서, 안정적인 블록체인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활용되는 '산타캐시'채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그 활동 정도에 따른 보상으로 '산타캐시'토큰을 지급받게 됩니다.

(4) 다음으로 누구든지 암호화화폐거래소 등에서 '거래(매매)'를 통해 '산타캐시'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5) '산타캐시'토큰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위 토큰은 그 자체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용처가 없고 토큰 소유자는 암호화화폐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법정화폐로 환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6) '산타캐시'토큰 소유자는 현재 귀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전 지급또는 용역 제공을 청구할 수 없고, 귀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귀사는 '산타캐시'토큰 소유자에 대하여 '산타캐시'토큰의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즉, 위 토큰의 소유자는 현재 귀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7) 다만, '산타캐시'토큰은 향후 암호화화폐와 관련하여 별도의 거래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정한 정량적 가치가 화체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 채무증권 해당 여부

- (1)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2) '산타캐시'토큰은 발행주체가 일반 사기업인 귀사이므로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국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며(이하 귀사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생략합니다), 귀사가 원금 및 이자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사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업어음증권에도 속하지 아니 합니다.
- (3)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의 정의에 관하여 무엇이 '지급청구권'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증권의 상위개념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서는 "금전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4)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산타캐시'토큰은 특정한 정량적 교환가치가 화체된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사 또는 제3자에 대한 금전 등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지분증권 해당 여부

- (1)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되거나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2) '산타캐시'토큰은 소유자가 귀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출자지분 및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라. 수익증권 해당 여부

(1) 수익증권이란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여 발행한 증권 및 동법 제189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2) 우선, 귀사의 설립목적은 별도 서면으로 제공된 바 없으나 귀사의 구두설명에 따르면 귀사는 일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뿐이므로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산타캐시'토큰은 수익권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가의 확정 또한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위 토큰은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마.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1)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그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2) '산타캐시'토큰의 소유자는 ①우선 귀사의 기부 플랫폼 참여자들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원인으로 하여 토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②다음으로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구매를 한 소유자는 귀사에게 금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③이들 소유자는 단지 자율적으로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을 뿐이며 ④이와 달리 귀사의 별도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귀속 받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산타캐시'토큰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바. 파생결합증권 해당 여부

(1)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할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2) '산타캐시'토큰은 그 소유자가 귀사 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를 미리 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그와 유사한 권리의 표시도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 증권예탁증권 해당 여부

(1) 증권예탁증권이란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2) 귀사는 '증권을 예탁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타캐시'토큰은 증권 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 소결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유형별 증권의 정의에 비취볼 때 '산타캐시'토큰은 동법이 적용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Ⅲ. 결 어

'산타캐시'토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귀사의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하오니 위 의견에 관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본 의견서는 코인원 거래소 제출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수정되거나 제3자에게 배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첨부자료

1. 백서 1부

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원

주식회사 씽킹블록체인 귀중